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75
----------	-------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자 : 전현희 · 김동아 · 한준호
이정문 · 서영교 · 박지원
김영배 · 서미화 · 이기현
이병진 · 김 윤 · 박해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담당자가 고의·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30조제1

항 제3호 신설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을 “누구든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보도되었을 때에는”을 “보도된 경우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사람의”를 “사람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의”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

제31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u>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u>누구든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u> ----- ----- -. ----- -----.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u>보</u> 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u>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 ----- -----보 도된 경우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
③ 위원회는 <u>제2항에</u> 따른 경	④ ----- <u>제3항에</u> -----

[illegible]

⑤ -----

-사람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
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의-----

제30조(벌칙) ①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